

의안번호	2208535
의 퇴 인	송석준 의원
회 답 일	2025. 5. 29.
추계번호	25B118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1조의5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전담인력 및 장비 등) 신설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각 공항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조명탄 등과 같은 공항시설 및 항공등화를 운용하거나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용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56조의4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신설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56조의5 (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른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해당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소유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와 협의하여 그 복구와 이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와 건물 또는 그 토지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소유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와 협의하여 매수 또는 사용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1조의5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전담인력 및 장비 등) 신설	· 미대상 - 현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를 운용 중임¹⁾ - 개정안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 주체는 공항운영자로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류탐지 레이더의 경우 김포·김해·제주공항에 각 2식, 그 외 공항은 각 1식을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단가는 1식 설치 시 약 40억, 2식 설치 시 약 72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임(설계 과정에서 변동가능) ※ [참고자료] 국내 공항조류 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참고
2	안 제56조의4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신설	· 미대상 - 개정안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²⁾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조문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6조의5 (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4호)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각 공항의 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조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① 공항운영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주로의 수에 따라 적절한 조류 충돌예방 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 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2. 상세 사유

□ 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안 제56조의5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이 제56조제5항³⁾에 따른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해당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의 복구 및 시설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소유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와 협의하여 그 복구와 이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이 있는 토지와 건물 또는 그 토지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소유자나 사용권을 가진 자와 협의하여 매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상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운영시간 적용 활주로수	9시간 이하	9시간 초과 18시간 이하	18시간 초과
1개	4명	8명	12명
1.5개	6명	12명	18명
2개	8명	16명	24명
2.5개	10명	20명	30명
3개	12명	24명	36명
3.5개	14명	28명	42명
4개	16명	32명	48명

- 2)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각 공항의 지방항공청과 공항운영자는 공동으로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통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적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야생동물학회의 야생동물담당자,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조류와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력의 배치 상황(주간 및 야간)
 3. 제8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검토의 수립 시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기타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전년 동기 대비 조류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책 등 논의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충돌보고와 충돌 조류의 종 확인의 적정성 검토
 6. 제33조에 따른 공항주변 토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 3)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에 따라 보상해야 할 복구·이전 및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시설의 면적 등을 알 수 없고, 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국내 공항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인원	국내 공항 조류충돌 예방 장비					
		경보기	폭음 경보기	엽 총	열화상 카메라	음파 분산기	써치 라이트
인 천	51	—	—	36	4	2	—
김 포	25	—	20	24	2	—	—
김 해	17	—	8	23	2	—	—
제 주	24	—	10	24	2	1	—
대 구	8	—	—	8	1	—	—
울 산	4	—	18	4	1	—	—
청 주	8	—	—	8	1	—	—
양 양	5	—	18	4	1	—	—
무 안	5	11	11	4	1	—	1
광 주	8	—	—	8	1	—	1
여 수	4	—	12	4	1	—	—
사 천	2	—	—	2	1	—	—
포항경주	2	—	9	2	1	—	—
군 산	미군수행	—	2		1	—	—
원 주	4	—	—	2	1	—	—

주: 2025. 5.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